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622호 2021. 10. 8.(금)

예 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1

회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규 제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신고자 등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상담창구 설치·운영, 고충처리 매뉴얼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을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상담 및 사건의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특정성별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업무 담당 공무원 및 인사·복무·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에 대한 고충 접수,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 부서 간 협조 및 조정

③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신고센터)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신고 접수를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충상담원의 역량강화 등) ①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로 인한 장기출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
- 3.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③ 구청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게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 신청을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구청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 소속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조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조사과정 중 2차 피해 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2차 피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 등을 손상시키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이 사건을 조사할 때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와 동행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인 등을 조사과정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조사기간 중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공간 분리,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고,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1.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2.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3.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 발생의 방치
4.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및 의도적으로 직무에 대한 성과를 낮추어 평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사건과 관련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5명 이내
2. 인사·복무업무 담당부서장 1명
3.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1명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수영구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전의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

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임명위원과 위촉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 구청장은 사건의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직원을 조사하여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 의결요구 중인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부산시장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생한 사건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1. 다수의 사람이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 2. 한 해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사안 개요

(1) 당사자

-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1) 성희롱·성폭력의 여부 판단 (2차 피해 포함)
-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제안이유

성희롱·성폭력 사건 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반영하고 재발방지조치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위 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라.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마. 고충상담원의 역량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바. 고충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사.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제10조)

아.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자. 징계와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3조~제14조)